

주주 귀하

##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
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일시 : 2014년 3월 21일(금) 오전 10시
2. 장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사학연금공단빌딩 2층 회의실  
※ 문의번호 : TEL (02) 3430-4038
3. 보고사항 :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
4. 회의 목적사항  
제1호 의안 : 제19기(2013.1.1~2013.12.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  
※ 현금배당 예정내용 : 1주당 배당금 150원  
제2호 의안 : 사내이사(상근) 신경식 선임의 건(재선임) - 별첨1 참조  
제3호 의안 :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
제4호 의안 :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
제5호 의안 : 임원퇴직금지규정 변경 승인의 건 - 별첨2 참조

### 5.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<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>

- 직접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, 신분증
- 대리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-주주총회참석장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어야 함), 대리인의 신분증  
※ 주주총회 참석장을 받지 못하신 소액주주님들은 주주총회 참석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)

<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: ※ 실질주주만 해당>

-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6. 주주총회 참석 및 위임장 작성 안내

당일 참석하실 때에는 회의장 앞 접수처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신 후 입장하여 주시고, 위임하실 때에는 위임장을 작성 기명날인하여 대리인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※ 위임장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3월 4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사학연금회관 14,15층

**주식회사 브리지텍**  
대표이사 이 상 호

직 인  
생 략



별첨 1) 제 2 호 의안 : 사내이사(상근) 신경식 선임의 건

● 이사 후보자의 약력

성명	추천인	주요약력	기 타	비고
신경식	이사회	- 1969년생 인하공전 전자과 졸업 現) 브리지텍 전무이사	- 최대주주와의 관계 : 관계없음  - 당사와의 거래내역 : 거래내역 없음	중임

별첨 2) 제 5 호 의안 :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의 건

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신.구 조문 대비표

~ 을	~ 으로
<p>제2조 【적용범위】 법령과 회사의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① 본 규정은 비등기임원을 포함한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 <p>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.</p>	<p>제2조 【적용범위】 법령과 회사의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① 본 규정은 비등기임원을 포함한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단, 사외이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.</p>
<p>제4조 【퇴직금】 ① 임원의 퇴직금산정은 아래에서 정한 직위별 퇴직금 지급률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.</p>	<p>제4조 【퇴직금】 ① 임원의 퇴직금산정은 아래에서 정한 직위별 퇴직금 지급률표를 기준으로 하며, 퇴직연금(확정기여형)에 가입한다.</p>
<p>부 칙</p> <p>제 1 조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 본 규정은 2002년 3월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하며, 임원 선임일부터 소급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제3조 본 규정은 2006년 3월 1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하며, 임원 선임일부터 소급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제 4조 본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하며, 개정일로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제 5 조 본 규정은 2007년 3월 2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하며, 2007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제6조 본 규정은 2013년 3월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하며,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.</p>	<p>부 칙</p> <p>제 1 조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 본 규정은 2002년 3월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하며, 임원 선임일부터 소급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제3조 본 규정은 2006년 3월 1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하며, 임원 선임일부터 소급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제 4조 본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하며, 개정일로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제 5 조 본 규정은 2007년 3월 2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하며, 2007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제6조 본 규정은 2013년 3월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하며,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제7조 본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하며, 2013년 1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.</p>